국방안전기본법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5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병주·김준혁·윤후덕

정성호 · 정동영 · 민병덕

송옥주 · 추미애 · 강득구

강준현 · 최민희 · 김남근

소병훈ㆍ허 영ㆍ권향엽

황 희·안태준·이기헌

서영교 · 김민석 · 한정애

안규백 • 위성락 • 박선원

문진석 · 서미화 · 조계원

황명선 · 김태선 · 부승찬

홍기원 의원(31인)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보호할 보호장비 부족 등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무리한 수중수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1) 제4편 사고예방을 근거와 「국방안전훈령」을 근거로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21년부터 '23년까지 군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망자 267명중 군기사고 사망자가 211명, 안전사고 사망자가 51명임. 이 기간동안 육군의 사고를 예를 들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과 중상 165명 경상 65명으로 안전으로 인한 커다란 인명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군의전투력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로 나타났음.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

^{1)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국방부 및 국방부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안 제 3조).
- 다. 국가는 각종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활동, 통계자료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국방인력은 이 법에 따른 국방안전에 관한 시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 조직편성 에 맞게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편성,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10조).
- 자.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함(안 제11조).
- 차.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안 제12조).
- 카.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위험관리의 원칙을 설정학 안전사고 예방대비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사고의 등급을 설정, 위험성평가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치와 안전기준을 설정,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설치, 안전검사와 안전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 타. 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 도록 함(안 제28조).
- 파.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을 위해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전사고조사의 수행, 조사결과 결과보

- 고, 안전사고 정보공개, 안전권고,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사고사례전파 등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 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대응 기구의 설치, 안전사고대책 반,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절차 및 운영과 사망사고 처리 원 칙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거.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운용, 국방안전정보의 연계・고유 절차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너. 안전성과 평가를 위해 안전성과 평가쳬계를 정립하고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부터 제47조까지).
- 더.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협력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각급기관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용, 국방 안전의 날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 러. 대외적인 안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안전자문휘원회 등의 운영과 대외 전문기관 교류·협력 강화 등을 하도록 함(안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

국방안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 써 국방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나.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
 - 다.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 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군 및 국방 부 직할부대·기관 소속 근로자
- 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방·군사시설,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
 - 다. 그 밖에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해병 대를 포함한다)·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 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
 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 시로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 기관에 의하여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

- 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위한 활동을 말한다.
- 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재산의 손상·손 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
- 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 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자재, 물질, 소음, 기온·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를 말한다.
- 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1.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 3.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국직부대등"이라 한다)
- 제4조(국가 등 책무) ① 국가는 각종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활동, 통계자료유지, 안전의 식 확산, 안전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방인력이 재난으로 인한 대민지원 시 안전한 가운데 대민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방인력의 책무) 국방인력은 이 법에 따른 국방안전에 관한 시 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방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방 안전관리체계 제1절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 제7조(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간사를 통하여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간사는 군수관리관이 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방안전관리 조직 • 인력

- 제8조(안전관리 기능별 임무·역할)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 기능별임무와 역할을 국방부 조직편성에 맞게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편성,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안전관리담당관 지정) ①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말하며 임 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
 - 2. 안전관리관은 안전책임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임무를 수행한다.
 - 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감독
 - 나. 안전검사 · 점검 · 진단 및 평가 총괄

- 다.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활동 계획 수립
- 3. 안전담당관은 안전관리관을 보좌하고, 각급 기관의 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확인 · 보고 등 대응
 - 나. 안전사고 데이터 등 안전정보의 기록 및 관리
 - 다. 국방인력 대상 안전 교육 실시
 - 라. 안전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신고 관리
 - 마. 위험성평가, 안전검사 · 점검 · 진단 등 예방활동
 - 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관의 편성과 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③ 각급 기관은 매년 1월 소관 안전관리담당관 현황을 최신화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제10조(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당연도 2월까지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해당연도 4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해당연도 6월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에는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재난에 관한 대책
- 3. 군 안전사고 예방 · 관리에 관한 대책
- 4. 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까지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 2.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 ⑦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반영 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제11조(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는 제 10조에 따라 시달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확 정하며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 에 통보한다.
 - ③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 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④ 국방부 관계 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출한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한다.
- 제12조(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국방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상 안전관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조 정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협의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제1절 안전사고의 분류

- 제13조(안전사고의 유형) ① 국방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위험 분석 및 사고 교훈의 공유를 위하여 안전 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안전사고 관련 유형을 제공한다.
 - ② 군의 안전사고는 적어도 하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
 - ③ 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유형보다 하위의 분류 기준을 운용할 때에는 국방

부 군수관리관실에서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사고의 등급) 안전사고는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규모를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세부 등급 및 평가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안전사고 예방 관리

- 제15조(위험관리의 원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한다.
 - ② 위험관리 절차는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의 예측 및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선, 위험성 감소 대책의 감독 및 사후평가 등을 포함한다.
- 제16조(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시·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을 고려하여야한다.
- 제1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

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별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군사교육훈련
- 2. 국방 무기체계 획득
- 3. 탄약 및 폭발물 관리
- 4. 국방·군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험성평가의 지원) ①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한다.
 -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부대ㆍ기관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 4.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 5. 부대ㆍ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6.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 7. 전문가 양성
-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②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 중 필요한 사항을 각급 기관 소속의 안전 부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각급 기관의 안전 부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국방부는 그 추진결과 및 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안전보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ㆍ기구, 장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안전기준) ① 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의 분야별 위험성의 수준과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안전기준 정립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 무기체계
 - 2. 국방·군사 시설
 - 3. 군의 특수한 장비 · 물자 및 소프트웨어
 - 4. 그 밖의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기계 · 기구 · 설비 · 물자 등
 -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국방부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에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국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안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 그 밖의 지역적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운영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 담당관이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누출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대·기관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보건진단) ① 각급 기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

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위생, 질병 발생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소속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진단을 지시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야별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 제24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대,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②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기관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1. 안전사고 또는 작업상 건강장해 발생률이 같은 임무활동의 제대 규모별 평균 발생률보다 높은 부대·기관
 - 2. 소속 국방인력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B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부대·기관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 한 부대·기관
- 4.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속한 부대ㆍ기관
- 5.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대·기 관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부대 ·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해당 안전보건개선 계획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기관에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 시·안내 또는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국방인력 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국방 안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 제26조(안전검사) 각급 기관의 장은 승강기, 고소작업대 등 개별 법령 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관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안전신고를 접수한 안전관리담당관은 각 부대·기관에서 조치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다른 부대·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대·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사항이 접수부대·기관보다 상급부대·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인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 관리담당관이 상급부대·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⑤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보고·조사 및 대응 제1절 안전사고의 보고

- 제28조(안전사고 보고 등)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사고 발생 부대·기관의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고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상급과 차상급 부대·기관 및 군 안전부서에 동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사고 상황개요 및 확인사항에 대한 참모보고 및 상황계통 보고
 - 2.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의 후송 및 치료 등 구조 활동
 - 3. 안전사고 관련 현장 보존
 - 4.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람 및 목격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
 - 5. 안전사고의 확대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 ③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등급에 따른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등급: 다음 각 목의 장은 각 예하 부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 나. 합참
 - 다. 각군 및 국직부대등
- 2. B등급: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합참 및 국 직부대등의 안전사고 관리부서와 각군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국방 부(재난안전관리과)로 사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C등급: 각급 기관의 지휘통제실(지휘통제실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관리부서)은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예하 부대·기관에서 보고되는 사고 상황을 보고(각군은 각군 안전 관련 부서에도 동시보고)한다.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D등급 이하 : 제1호의 각 목의 장이 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A등급에 준하여 보고한다.

- 1. 비행사고
- 2. 수상 또는 해상사고(함정 침몰 및 충돌 사고에 한정한다)
- 3.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 4. 그 밖에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 ⑤ 보고는 구두, 서면, 문자메시지, 지휘통제체계를 이용한 보고를 병행한다. 최초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후 진행되는 중요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한다.
- 1. 안전사고의 유형(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발생 일시 및 장소
- 3. 발생 경위(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사상자, 재산 피해 등 피해 상황(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안전사고의 등급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상황파악에 필요한 사항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사고 상황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안전사고 발생 시 국방부령에 따라 해당 사고속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 관계 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2절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 제29조(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①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발생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 써 동일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② 안전사고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인적·물적·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A등급 안전사고 : 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수행
 - 2. B등급 이하 안전사고 :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조사주체가 사고조사 수행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식별되는 경우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조사위원 회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안전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 제30조(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군: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2. 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주 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자원관리실장 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1.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 2.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
 - 3. 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 4. 각군 및 각 국직부대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안전사고 조사
 - 2.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
 - 3. 안전권고
 -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 ④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안전관리담당관(1인 이상) 및 군사경찰을 포함한 각 분야별 소요인원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조사의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주요 사고별 조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사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 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안전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사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전문조사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리방법, 교육내용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속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1.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 2. 안전사고 현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 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 3.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 4.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밀 자료의 열람과 비밀장소의 출입 (조사 수행 활동 중 해당 부대·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 5. 안전사고 현장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 ② 조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사항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위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저촉되어 협조가 불가할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33조(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개요
 - 2. 사실 정보
 - 3. 원인 분석
 -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 5. 안전권고 및 건의사항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

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장 등을 보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에서 요청 시 안전 사고 조사 또는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여건 등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 ④ 각군 및 국직부대등에서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거나, 조사 및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 제34조(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통제)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공개가 안전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35조(안전권고의 조치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 중 또는 안전사고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 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관리 할 다음 각 호의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1. 국방부 : 재난안전관리과
 - 2. 각군, 국직부대등 : 자체 규정 등에 따른 담당부서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발행된 모든 안전권고에 대하여 관계부서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문으로 기한을 정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접수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계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계획 및 조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 및 조치시기 등이 해당 안전권고 또는 건의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시한 안전권고 사항이 타당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⑤ 각급 기관은 국방부의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제36조(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① 각군 안전관리기구, 각 국직부대등 의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사고의 기록유지 및 관리, 통계 분석의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재난안전관리과)은 각군의 안전사고 기록과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며, 필요시 각군 안전단 등 안전 관련 부서의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 후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사고 기록 자료는 안전사고의 관련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 안전사고 통계 작성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제37조(안전사고 사례 전파)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파할 수 있다. 특히, 각군의 안전사고 중 타 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는 국방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 개요, 원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작성하고 각군에 공유할 수 있다.
 - ② 안전사고 사례 전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파를 금지할 수 있다. 단,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은 실무위원회의 심 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1.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사고
 - 2. 수사, 사고의 확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고
 - 3. 개인 및 부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사고
 - 4. 언론매체 및 사회여론에 노출 시 군의 사기, 단결을 저해하는 사고

제3절 안전사고 대응

제38조(안전사고 대응 기구) ① 국방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

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② 각급 기관은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을 참고하여 제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대응기 구를 운영한다.
- ③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제39조(안전사고대책반) ① 국방부는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사고 중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에 대 해서는 최단 시간 내에 안전사고대책반을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운영 여부는 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하며, 최초 상황평가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주관하여 관계 부서 협의 하에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령에 따라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각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에게 건의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건의받은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안전사고대책반에서 상황 평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황평가를 국방부 장·차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에서 수행하고, 보도자료는 대

변인실에서 제공한다.

- ④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사고 발생 초기 상황 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
- 2. 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등 안전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
- 3. 안전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 시 지침 제공
- 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
- 5. 담당 부서별 소관 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
- 제40조(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① 제39조에 따른 안전사고대책반으로 는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제한될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소관 실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②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 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 영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사망사고 처리원칙) ① 사망사고 처리원칙은 국방부렁으로 정

한다.

② 사망사고의 처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수행하고, 처리 시까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평가 및 환류 제1절 국방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제42조(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① 국방부는 재난 및 각종 안전 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과 신체 및 국방자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국방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 2.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 3.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 4.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 5. 제33조에 따른 안전사고 조사 결과
 - 6. 제35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따른 조치결과
 - 7. 제5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방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국방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방부는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① 국방부는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방 안전 분야의 통계지표를 개 발·작성·보급하여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② 국방부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생산한 안전사고 통계를 공표하고 자 하는 경우 C급 이상의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 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다.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안전통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안전 관련 정보가 종합적 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④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제4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방안 전정보의 작성, 기록 및 보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의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관리,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4조(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운용) ① 국방부는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관련 통계분석의 효율적 지원 및 기관간 국방안전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를 총괄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관리담당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 및 부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국방 안전정보(사고정보 DB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제45조(국방안전정보의 연계·공유) ① 국방부는 의미 있는 국방안전 정보의 생산 및 분석을 위하여 군수, 시설, 보건 등 자원관리체계 및 그 밖의 정보시스템과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연동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각급 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산·수집·보유하고 있는 국방안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할 수 있다.

제2절 안전성과 평가

- 제46조(안전성과 평가 체계) ① 국방부는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우수한 안전관리 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매년 각급 기관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추진실적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 1.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유해 · 위험요인의 제거
 - 2.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조직 또는 인력의 구성 및 정비
 - 3.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4.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사고예방에 관한 홍보 등
 - ③ 국방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 및 성과지표 등을 개발하며 평가체계 및 성과지표 등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부대·기관에 대하여 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평가 항목, 절차, 기간 등 안전성과 평가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 제47조(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① 국방부는 제46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대·기관이나 인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성과에 대한 포상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 제1절 안전문화의 증진

- 제48조(안전문화활동의 추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의 안전의 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을 포함한다)
 -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안전문화활동에 소속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9조(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는 제48조에 따른 안 전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부대 훈련 등 각급 기관의 교육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 제50조(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 규정 및 제도
 - 2. 국방안전정책 및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계획
 - 3. 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안전관리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 등 안전 직무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상황 대처 등 국방 임무 수행상 필 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 5.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6.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및 교훈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은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소양교육 : 부대·기관의 전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의식 함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
- 2. 직무교육훈련: 안전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규교육훈련과 관련 법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으로 구분
- 3. 전문교육훈련 :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전문지식 또 는 직무역량 습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직은 해당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안전 관련 학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 2.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 교육과정
- 제51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결과를 작성·기록하 고 보존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 대·기관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운용) 각군 참모총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 보하고, 국방인력의 안전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별 안전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3조(국방안전의 날 등)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 및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에 국방인력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 등을 실시한다.
 - ②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재난 및 안전사고 취

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각 부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경우 일자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급 기관은 소속 기관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별도 일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외 안전 협조체계 구축

- 제54조(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① 국방 안전 관련 중요정책의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국방부령으로정한다.
 -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자문을 요청한 경

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대외 전문기관 교류·협력 강화) ① 각급 기관은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업하고 대외 안전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기관은 안전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경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기관, 협력내용 등 협약결과를 국방부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화시스템 구축)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이 법
공포 후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